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기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62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이광호, 이병도, 이영실,
이정인, 장상기, 전석기,
최 선, 홍성룡, 황규복
의원(21명)

1. 제안이유

- 2022년부터 서울시 내 모든 유치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식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책무가 커지고,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화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내 학교에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식생활 및 자연, 농업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학교텃밭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교텃밭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라.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마. 학교텃밭 조성 기준과 학교텃밭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바.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사.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교와 교사, 단체 등의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텃밭을 활용한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농업 및 자연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유도하고, 학생의 정서 및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학교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와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텃밭이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생태전환교육 수행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텃밭의 현황과 조성 기준
2.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3. 학교텃밭 조성·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의 교육활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텃밭 조성·운영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학교텃밭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텃밭의 조성, 유지 및 관리
2. 학교텃밭을 활용해 진행되는 교육활동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학교텃밭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진행되는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활동

4. 학교텃밭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지원
5. 그 밖에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텃밭의 조성 기준)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을 확보하되 학교 환경과 교육 활동 여건에 적합할 것
2. 교육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 구성할 것
3. 실내와 옥상, 자투리 공간 등을 충분히 활용하되 학교텃밭 내에 자
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과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텃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텃밭 또는 도시농업 관련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2012000000026

비용추계서

요청인 : 최기찬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2.01.20

회신일 : 2022.01.20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관련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행정, 재정적 지원사항),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학교 텃밭 관련 활성화 행정 및 재정 지원(안 제5조 참조)
- 학교 텃밭 관련 현황 및 활성화 용역비(안 제7조 참조)

나. 전제

- 비용은 2023년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가정
- 물가상승율 미반영
- 실태조사는 학교텃밭 현황 및 활성화 용역을 3년 주기로 시행가정

다. 추계기간

- 2023~2027년(5년)

라. 추계방법

- 학교 텃밭 조성 및 관리비용 예측을 위하여, 유사 사업을 기진행중인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의 2019~2022년 연도별 지원 대상 및 예산 작성에 사용된 단가를 참조함
 - 2023년 이후는 2019~2022년 연도별 지원대상 평균 개소로 산정하고, 단가는 2022년 예산 편성 단가참조
- 실태조사비는 학교텃밭 현황 및 활성화관련 유사 용역비를 적용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6,756,2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합계
세입	학교텃밭 조성 관련세입	-	-	-	-	-	-
	소계 (a)	-	-	-	-	-	-
세출	학교텃밭 조성 관련세출 (안 제5조 1~5호)	1,343,240	1,343,240	1,343,240	1,343,240	1,343,240	6,716,200
	살태조사비(안 제7조)	20,000	-	-	20,000	-	40,000
	소계 (b)	1,363,240	1,343,240	1,343,240	1,363,240	1,343,240	6,756,200
□ 총 비용 (b-a)		1,363,240	1,343,240	1,343,240	1,363,240	1,343,240	6,756,2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당관
추계세제팀장
예산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이정수
류동균

☎ 02-2180-7954

e-mail : rooster7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행정, 재정적 지원사항) 등 개정에 따른 예산 소요 발생

2. 세부추계 내역

- 학교 텃밭 활성화 관련 총 비용 = 6,756,200천원 = 학교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비 총비용 6,716,200천원(1,343,240천원×5개년) + 학교 텃밭 현황 및 활성화 용역비 40,000천원
- 학교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비 총비용 = 조성 및 유지관리비 연간비용×5개년 = 1,343,240천원 (학교텃밭 조성비 + 학교텃밭 유지관리비)×5개년 = (875,075천원 + 468,165천원)×5개년

〈학교 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비 연간비용 세부 내역 (단위 : 지원학교수, 평균 단가, 천원)〉

구분	항목	2019	2020	2021	2022	4년 평균	단가	연간비용
소계		678	656	547	529	653	-	1,343,240
학교텃밭 조성	상자텃밭틀, 원예용 상토 등 조성비	115	66	57	39	69	12,636.5	875,075
학교텃밭 유지관리	텃밭운영 재료비	200	200	100	100	150	550	82,500
	매뉴얼	233	300	300	300	283	20	5,665
	강사료	130	90	90	90	100	1,800	180,000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	-	-	-	50	4,000	200,000

- ※ 학교텃밭 조성관련 지원 학교수는 신규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학교텃밭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농업 농기술센터 2019~2022년 기지원 및 지원예정 개소 참조
- ※ 단가는 두과의 2022 예산 산정시 적용단가 적용(도시농업과 자료는 지원 면적당 단가를 지원 학교수로 환산하여 단가 산정)
- ※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은 학교텃밭 활성화 조례안 제5조 3항 지원 항목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활동비용으로 우수 학교로 선정된 50개학교에 대하여 공무원의 워크숍 비용을 참조하여 작성
- 학교 텃밭 현황 및 활성화 용역비 40,000천원
 - 학교 텃밭 현황 및 활성화 용역비 = 20,000천원×2회(3년 1회 시행)
 - ※ 학교텃밭 현황 및 활성화 용역비 20,000천원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현황 및 활성화 용역비 참조